## KOSHA GUIDE

C - 57 - 2017

## 5. 석재 설치 작업 시 안전조치 사항

## 5.1 일반사항

- (1) 석재 설치 작업 시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이 포함된 안전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.
- (2) 안전작업계획서 수립 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.
  - (가) 석재의 형태, 중량, 기상조건, 작업범위 등을 고려한 일정 수립
  - (나) 양중장비의 종류, 설치 장소 및 양중방법
  - (다) 근로자 동원 및 구성
  - (라) 전 · 후 작업의 진행 여부
  - (마) 가설전기 사용에 따른 계획
  - (바) 석재 설치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 검토 여부
- (3) 설치한 석재의 낙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구조체가 설계기준강도 이상이거나, 바탕면이 시공된 후 1개월 이상 경과한 후 붙이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4) 벽의 최하단에 석재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슬래브(Slab) 또는 기초 등이 없는 부분에는 석재붙임 완료 후 영구적으로 침하가 되지 않는 구조의 브라켓(Bracket)이나 기초를 설치해야 한다.
- (5) 석재 설치 작업 시 떨어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난간과 승강통로가 확보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, 또한 자재의 낙하에 의한 물체에 맞음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낙하물 방지망, 수직보호망 및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, 출입금지구역의 설정,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필요한 조치는 실란트 작업 등 마감작업이 완료 될 때까지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.
- (6) 크레인을 이용하여 석재를 양중 할 때는 자재가 낙하하지 않도록 석재의 결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.